

고용노동부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

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(직업상담원 휴직 등 대체인력)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,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6. 7. 9.

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

I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

구분	채용부문 (채용기간)	채용인원	근무부서	주요 업무
기간제근로자	직업상담원 휴직 등 대체인력 (‘26. 7. 22.~’26. 11. 21.)	1명	강북성북 고용센터	직무설명서 (붙임1)

II 응시자격

구 분	주 요 내 용
응시 자격	· 제한 없음
학력·전공	· 무관
성별, 연령	· 제한 없음
기타	·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· 인사 관련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※ 기타 유의사항 참조

III 전형절차 및 일정

○ 전형절차

서류전형



면접전형

- 응시자의 직무적합성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·부적격 여부 판단
- *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
- 직업기초능력, 직무수행능력(지식, 기술, 태도) 등을 평가

○ 전형일정

전형일정	일 시	비고
지원서 접수	2026. 7. 9.(목) ~ 7. 15.(수) 18:00까지	- 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·제공 동의서 등 제출 ※ 고용 24 e-채용마당을 통해 온라인 접수 ※ 증빙서류 등도 접수시에 필히 첨부하여 제출 •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는 서명 후 파일 첨부 ※ 고용 24 에서 지원서가 최종 제출되었음을 반드시 확인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2026. 7. 16.(목)	지청 홈페이지 공고 예정
면접전형	2026. 7. 20.(월)	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면접 일시 및 장소 공고 예정
면접전형 합격자 발표	2026. 7. 21.(화)	지청 홈페이지 공고 예정
채용	2026. 7. 22.(수)	근로계약 체결

※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

※ **최종합격자는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**

※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,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 시 면접 시험 성적에 따라 예비합격자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IV 우대사항

○ 서류전형 배점 평정 시 우대사항

구 분	우대사항
경력사항	•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직업상담 업무 경력자
자격사항	• 직업상담사 자격증

○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가산점 적용 사항

구분		부가 점수
사회 형평 가점	▲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 ▲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▲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▲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대상자 ▲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자	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% * 중복 가점 불가 (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)

V

접수서류

※ 경력증명서, 자격증 사본,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은 스캔하여 접수

제출 서류	제출 시기
• NCS기반입사지원서,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, 자기소개서 각 1부 (e-채용마당 직접 기재)	원서 접수 시
○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 (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)	
○ 자격증 사본 각 1부(해당자)	
○ 경력증명서 사본 각 1부(해당자)	
○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(해당자) - 장애인: 장애인증명서 1부 - 저소득층: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- 한부모가족: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- 북한이탈주민: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- 다문화가족: 다음의 증빙서류 각 1부 · 가족관계증명서 ·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· 부모 또는 배우자(귀화 허가를 받은 자) 명의의 기본증명서(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) ·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(결혼이민자)	
○ 공정채용확인서 1부(채용예정자)	채용예정자 대상
○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(채용예정자)	
○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1부(채용예정자)	

※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

※ 경력증명서는 해당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되, 근무기간, 직위, 직급, 담당업무 (소속부서)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

(국민연금, 건강보험 취득상실 이력은 경력증명서가 아닙니다)

VI

근무조건

- 근무기간: 2026. 7. 22.~2026. 11. 21.
- ※ 단, 대체 대상 근무자의 근무상황이 조기 종료될 경우에는 30일 전에 계약해지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
- 근무시간: 주5일(월~금), 1일 8시간(09:00~18:00, 휴게시간 1시간 포함)
- 근무장소: 강북성북고용센터(서울 강북구 도봉로136)
- 주요업무: 국민취업지원팀 소관 업무(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제4조에서 정한 업무 중 일부)
- 임금수준: 기본급(월 2,096,270원), 정액급식비(160,000원), 기타 법정수당 등
-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“고용노동부 기간제 근로자 운영규정”에 따름

VII

기타유의사항

- 응시자가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(최종 채용 합격자, 전자문서 및 고용노동지청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)하며,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파기합니다.
-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.
-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,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,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,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면접전형 결과 최고 순위 득점자의 성적이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혹은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- 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원조회·조사 및 채용신체검사,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합격 통보된 자가 첫 출근일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확인하고 포기의사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.

-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 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.
- 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.
- 채용 후 직무와 관련된 영리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됩니다.
- 결격사유

■ 「국가공무원법」

제33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(2013.7.1.전에 선고를 받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한다)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■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고용관리과 (02-950-9717)